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5
----------	-----

제출년월일 : '96. 5.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미비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완성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금까지의 안산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 법률과 내용이 중복되어 제 구실을 못하는 조문이 다소 있었으며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절차등 제반사항과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 앞으로는 *

- 분뇨및 오니의 처리비용 징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제5조)
- 정화조 청소업자가 정화조등의 청소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제5조)
- 과태료 부과시 의견진술, 이의제기, 강제징수 및 부과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제15조 내지 제23조)

□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제1호중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을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중 "분뇨의 적정처리를" 을 "분뇨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로하고, 본문중 "분뇨"를 "분뇨및 축산폐수"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2장 오수및 분뇨처리"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5조로하고 동조 제2항 후단에 "이경우 청소대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동항 제2호중 "청소된"을 "개별청소 대상시설의 청소된"으로하고 "징수하거나 정화조시설의 용량에 따라 징수한다"를 "징수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및 오니를 수집운반할때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분뇨수집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경우 개인별로 계산한 금액이 10원 미만이 있는 경우에 원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내지 제9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4조를 삭제한다.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 및 "제4장 분뇨와 관련된 영입허가등"을 삭제한다.

"제15조 내지 17조"를 "제9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제5장 보칙"을 삭제하다.

제18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제12조 내지 제14조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제15조 내지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 징수)과태료는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16조(의견진술)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차분 대상자에게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 후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독촉 통지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정수한다.

제2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한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는 국고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덧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서식 제1호) 내지(별지서식 제9호)를 덧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장 총 칙</u>	<u>(삭 제)</u>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의(정의)
1. "간이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허가 및 신고대상외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u>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u>)시장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분뇨처리의</u>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u>분뇨</u> 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u>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u>)
제4조(기본계획수립)시장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u>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의</u>
제5조(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지정)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의 전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오지, 벽지 및 도서지역 등 분뇨수집, 운반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기타 분리관리등을 통하여 오수가 하수종말	<u>축산폐수가</u>
	<u>(삭 제)</u>
	제4조(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지정)① (현행 제5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청소업자로 하여금 정수하게 할 수 있다. 3. (신 설)	3. 하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 및 오니를 수집운반할 때에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분뇨수집 수수료에 포함하여 정수한다. 이 경우 개인별로 계산한 금액이 10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원단위는 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처리장 사용료의 정수방법등)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리터당 100원을 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 허가를 받은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장 사용료의 정수방법등) ① (현행 제7조와 같음). 1. 2. 3. ②. ③. ④.
③ 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정수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4분의 1에 상당

현 행	개 정 안
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치리장사용료는 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별표 3의 치리장 사용진표를 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발매하고 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를 투입할 때 관계공무원에게 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⑤ 시장은 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제8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시장은 분뇨 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 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 대행) ① 시장은 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 농률적인 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 대행) ①(현행 제9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p><u>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오수정화 시설로서 각조의 오니가 부태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등을 제거한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u></p>	
<p><u>3. 오수정화시설등의 내부청소는 스컴, 침전 오니 및 찌꺼기등(오니 제거시에 함께 제거되는 오니를 포함한다.)을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u></p>	
<p><u>4.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자는 동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장이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수 있다.</u></p>	
<p><u>5. 제4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과 같다.</u></p> <p>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대학부설연구기관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 한 측정대행자</p> <p><u>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u></p>	<p>(삭 제)</p>
<p><u>제11조 (축산시설의 관리)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에 대하여 연1회이상 사육종별, 사육시설의 규모 및 축산폐수처리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시설의 배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한다.</u></p> <p><u>제12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①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u></p> <p>1. 정기점검</p> <p>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월 1회 이상</p> <p>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p> <p>2. 방류수의 수질측정</p> <p>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p> <p>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6월마다 1회 이상</p> <p>3.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p> <p>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과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p> <p><u>제13조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 법 제29조, 법 제37조 제2항 및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u></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p> <p>.....</p> <p>.....</p> <p>.....</p>
<p><u>제16조</u>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p>	<p><u>제10조</u>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p> <p>(현행 제16조와 같음).</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 또는 허가 요건의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등에 관한 사항 3. 분뇨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등의 이행여부 	<p>1.</p> <p>2.</p> <p>3.</p> <p>4.</p> <p>.....</p>
<p><u>제17조</u> (처리실적보고)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u>제11조</u> (처리실적보고) (현행 제17조와 같음)</p> <p>.....</p> <p>.....</p> <p>.....</p> <p>.....</p>
<p><u>제5장 보 칙</u></p> <p><u>제18조</u> (업무의 위탁등) ① 시장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u>제12조</u> (업무의 위탁등) (현행 제18조와 같음)</p> <p>.....</p> <p>.....</p> <p>.....</p>
<p><u>제19조</u> (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등에 대한 수집, 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등의 필요한 사항을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u>제13조</u> (행정협의) (현행 제19조와 같음)</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u>제 20조</u> (권한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p> <p><u>제 21조</u> (준용규정) 수수료, 배출부과금, 과징금과 대료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u>제 22조</u>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u>제 14조</u> (권한의 위임) (현행 제 20조와 같음).</p> <p>.....</p> <p>(삭 제)</p> <p>(삭 제)</p> <p><u>제 15조</u> (과태료의 부과, 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 징수 한다.</p> <p><u>제 16조</u> (의견진술)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p> <p>(신 설)</p> <p><u>제 17조</u>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 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 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독촉 통지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신 설)	<p>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p>
	<p>제1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지하여야 한다.</u></p> <p><u>제20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정수한다.</u></p>
(신 설)	<p><u>제21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귀속하여야 한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는 국고로 귀속하여야 한다.</u></p>
(신 설)	<p><u>제22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신 설)	<p><u>제23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u></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뇨수거수수료 (단위: 원)				(별표 1) 분뇨수거수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부과 대상</th><th>부과 기준</th><th>수거 요금</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분 뇨</td><td>18ℓ</td><td>200</td><td>*수거 요금에는 처리 비 100ℓ 당 100원이 포함됨</td></tr> </tbody> </table>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수거 요금	비 고	분 뇨	18ℓ	200	*수거 요금에는 처리 비 100ℓ 당 100원이 포함됨	<table border="1"> <thead> <tr> <th>부과 대상</th><th>부과 기준</th><th>수거 요금</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분 뇨</td><td>18ℓ <u>당</u></td><td>200 원</td><td>*수거 요금에는 처리 비 100ℓ 당 100원이 포함됨</td></tr> </tbody> </table>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수거 요금	비 고	분 뇨	18ℓ <u>당</u>	200 원	*수거 요금에는 처리 비 100ℓ 당 100원이 포함됨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수거 요금	비 고																																					
분 뇨	18ℓ	200	*수거 요금에는 처리 비 100ℓ 당 100원이 포함됨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수거 요금	비 고																																					
분 뇨	18ℓ <u>당</u>	200 원	*수거 요금에는 처리 비 100ℓ 당 100원이 포함됨																																					
(별표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수수료 (단위: 원)				(별표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수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용량</th><th colspan="3">요 금</th></tr> <tr> <th>계</th><th>청소 요금</th><th>추가 요금</th></tr> </thead> <tbody> <tr> <td>기 본</td><td>750ℓ</td><td>12,060</td><td>11,310</td><td>750</td></tr> <tr> <td>초 과 요 금</td><td>100ℓ</td><td>980</td><td>880</td><td>100</td></tr> </tbody> </table>				구 분	용량	요 금			계	청소 요금	추가 요금	기 본	750ℓ	12,060	11,310	750	초 과 요 금	100ℓ	980	880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용량</th><th colspan="3">요 금</th></tr> <tr> <th>계</th><th>청소 요금</th><th>추가 요금</th></tr> </thead> <tbody> <tr> <td>기 본</td><td>750ℓ <u>까지</u></td><td>12,060 <u>원</u></td><td>11,310 <u>원</u></td><td>750 <u>원</u></td></tr> <tr> <td>초 과 요 금</td><td>100ℓ <u>당</u></td><td>980 <u>원</u></td><td>880 <u>원</u></td><td>100 <u>원</u></td></tr> </tbody> </table>	구 분	용량	요 금			계	청소 요금	추가 요금	기 본	750ℓ <u>까지</u>	12,060 <u>원</u>	11,310 <u>원</u>	750 <u>원</u>	초 과 요 금	100ℓ <u>당</u>	980 <u>원</u>	880 <u>원</u>	100 <u>원</u>
구 분	용량	요 금																																						
		계	청소 요금	추가 요금																																				
기 본	750ℓ	12,060	11,310	750																																				
초 과 요 금	100ℓ	980	880	100																																				
구 분	용량	요 금																																						
		계	청소 요금	추가 요금																																				
기 본	750ℓ <u>까지</u>	12,060 <u>원</u>	11,310 <u>원</u>	750 <u>원</u>																																				
초 과 요 금	100ℓ <u>당</u>	980 <u>원</u>	880 <u>원</u>	100 <u>원</u>																																				
(신 설)				(별표 4) <u>별지 (덧붙임)</u>																																				
(신 설)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별지 서식 제9호) <u>별지 (덧붙임)</u>																																				

(별표1)

분뇨 수거 수료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수거 요금	비 고
분 뇨	18ℓ 당	200 원	* 수거 요금에는 처리비 100ℓ 당 100원이 포함됨

(별표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

구 분	용 량	요 금		
		계	청소요금	처리요금
기 본	750ℓ 까지	12,060 원	11,310 원	750 원
초과요금	100ℓ 당	980 원	880 원	100 원

(별표3)

NO 000001 위생처리장사용권 (보관용) 일 금 1,000원 안 산 시 장	NO 000001 위생처리장사용권 (제출용) 일 금 1,000원 안 산 시 장
---	---

(별표 4)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부 파 대 상	부과금액(천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 (법 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 미만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 1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	300	40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400	500	60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600	700	800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800	900	1,000

부과 대상	부과금액(천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10㎥ 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2) 처리용량 10㎥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0	400	500
다.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1) 방류수 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2) 방류수 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3)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4)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0	500	1,000
나. 정화조의 경우	100	200	500
3.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법 제11조 또는 제26조)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00	200	2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300	3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부 과 대 상	부과금 액(천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500	500	5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4. 오수정화시설·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자(법 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 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5.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제28조 제2항)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대상 인원 2000인 이상인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인 오수 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100	200	5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2)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 이상	300	500	1,000
(3) 1일 처리용량 5㎥이상인 축산폐수정화 시설(신고대상)은 연 1회 이상	100	200	500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정화조, 축산 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100	300	500
(2) 처리용량이 10㎥이상인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의 경우	300	5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700	1,000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 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일자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허가 대상)	500	1,000	1,000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 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15조 제1 항)	500	700	1,000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 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법 24조 제2항 또는 제4항)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300	500	8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8.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법 제35조 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100	300	500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법 제35조 제6항)	300	500	1,000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 제2항)	300	500	1,000
11.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 제3항)	300	500	1,000
12.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자(법 제43조)	500	700	1,000
13.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자(법 제44조)	300	500	1,000
14. 휴업.폐업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법 제45조)	300	500	1,000
1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법 제46조 제1항)	300	5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 한다.

3.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4.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동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 까지로 한다.
5.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을 말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 제4항의 축산폐수 배출 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수증					
(업소 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				
주소	동 번지				
성명					
구 분	수 거 량	단 가 (원)	금 액 (원)		
			기본	초과	계
정화조 청소 수수료	ℓ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인)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귀하					

* 본 영수증은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시청 제출용)					
No.	정화조고유번호:				
주소	동 번지				
성명					
구 분	수 거 량	단 가 (원)	금 액 (원)		
			기본	초과	계
정화조 청소 수수료	ℓ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인)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귀하					

* 본 영수증은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민원인 보관용)					
No.	정화조고유번호:				
주소	동 번지				
성명					
구 분	수 거 량	단 가 (원)	금 액 (원)		
			기본	초과	계
정화조 청소 수수료	ℓ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인)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귀하					

* 본 영수증은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
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
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인

(개인통지용)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		
위반사항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률 제 조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		
위반사항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률 제 조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		
위반사항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률 제 조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		
위반사항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률 제 조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안 산 시 장

수납일부인

안 산 시 장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남 부 독 족 장						
남 부 의 무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에 남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까지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인

독촉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 조제 항		
남부의 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납부 기한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 조제 항		
남부의 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납부 기한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시정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 조제 항		
남부의 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납부 기한		

위의 과태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안 산 시 장 귀하

영 수 인

(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 조제 항		
남부의 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액	비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 내 역	④ 부 과 기 관			⑤ 남부통지서 번호	
	⑥ 고지 받은 일자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 태 료 처분 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에 대한 불복 사유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卷之三

인 신청서

암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신 안산시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 제기자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 금액	
	⑥ 부과기관		⑦ 이의제 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수납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 서번호	③ 과태 료처분 통지일	④ 독촉 장발부 일	납부기한		⑦금액	납부의무자		⑩과태 료납부 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제기일	⑫법원통보일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495
------------	-----

제출년월일 : '96. 5. 22.

제출자 : 보사·경제위원회
박선호위원 외 10인

1. 수정이유

- 국고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준용되는 "개별로 개산한 금액이 10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조례중 강제징수규정 및 준용규정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 제5조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수수료징수등) 제2항 3호중 "이경우 개인별로 개산한 금액이 10원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원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며,
- 제20조 (강제징수)중 "국세체납처분"을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수정하고, 제21조 (과태료의 귀속)을 삭제하고,
- 제22조 (과태료 수납부비치, 관리)를 제21조로, 제23조 (준용규정)를 제22조로 하고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안산시 시세부과징수규칙"으로 수정함.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2항 3호중 "이 경우 개인별로 계산한 금액이 10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원 단위는 정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제20조중 "국세체납처분"을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제21조로, 제23조를 제22조로하고 동조중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안산시 시세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